

---

#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

---

2014. 3.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공고 개요 .....          | 1  |
| II . 신청자격 및 제한 .....     | 3  |
| III 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.....  | 6  |
| IV . 선정절차 및 기준 .....     | 11 |
| <참고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> ..... | 19 |

# I

## 공고 개요

### □ 공고규모

- (자유응모과제) '14년도 정부출연금 61억원 내외
-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39.7억원 이내 우선지원, 해외기업·연구소가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15억원 이내 우선지원

※ 단,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우선지원을 선순위로 함

※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는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

| 기 술 분 야  | 핵심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능성강화 식품 | ①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<br>② 질병예방·건강증진용 식품개발<br>③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통웰빙식품   |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<br>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<br>⑥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 품질관리  |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<br>⑧ 식품의 원산지 및 위·변조 판별기술<br>⑨ 고효율/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<br>⑩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|
| 식품 핵심소재  |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<br>⑫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 기자재   | ⑬ 기능성 /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<br>⑭ 식품기계 개발기술<br>⑮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저탄소·신가공  | ⑯ 저탄소 식품가공기술<br>⑰ 고효율 식품가공기술<br>⑱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공고기간 : '14. 3. 26.(수) ~ 4. 25.(금), 31일간

□ 접수기간 : '13. 4. 8.(화) ~ 4. 25.(금) 18:00 까지

□ 지원분야 : 6대분야 18대 핵심기술

□ 선정 시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

-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별표 1에 의한 가·감점 기준 적용
  - 「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」에 의해 선정된 “농공상 융합형 기업”이 포함된 연구과제는 선정 시 과제별 가점(3점) 부여
  - aT의 현장코칭,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필요성이 도출된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(3점) 부여
    - \*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과 aT의 현장코칭, 컨설팅 사업에 대한 우대사항은 가점 중복적용이 불가함
  - 예산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·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- ※ (참고) 연구과제의 기술수준 향상 정도, 시장규모 확대 정도, 글로벌 제품 개발정도 등을 중점 평가 할 계획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

**<연구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(중점평가요소)>**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신규 개발 제품을 통한 매출·수출 증대 등 시장 파급 효과</li><li>②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, 생산성 향상 효과</li><li>③ 과거 선행 기술에 대한 상세 검토 및 기술 향상 효과</li></ul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□ 문의처

- 공고관련 일반문의 : 사업총괄실(031-420-6752)
- 과제 및 연구관련 문의 : 사업총괄실(031-420-6754)
-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: 정보분석실(031-420-6737, 6739, 6796)

## II

## 신청자격 및 제한

### □ 연구기관 신청자격

- (자유응모과제)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실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은 식품 관련 산업체로 제한함
- 다만, 아래의 기관은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
  - 국·공립연구기관
  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  -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 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
  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 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
  - 국외에 주사업장·주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·연구소(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)

### □ 연구책임자 신청자격

-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\*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
- 단,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\*로 함

\*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: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, 건강보험료, 국민(공무원·교원)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 자를 말함

## □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

- 연구책임자(주관·협동·세부)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,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- ※ 2012.7.2. 이전에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 이외의 세부·협동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책임자(책)에 포함하지 않음

| 과제수 제한기준(3책 5공)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① 2012.7.2.이후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</li> <li>2.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</li> <li>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</li> <li>4.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정부출연금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(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)</li> <li>5. 소규모 연구개발과제(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은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과제)</li> <li>6. 경상연구과제(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)</li> <li>7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</li> <li>8. 위탁연구과제</li> </ol> |
| <p>② 2012.7.2.이전 공고되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</li> <li>2.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</li> <li>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</li> <li>4. 경상연구과제(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)</li> <li>5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</li> <li>6. 위탁연구과제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\* 관련규정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
- \*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연구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

-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
  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
  - \* 관련규정 :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)
-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
  -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
  -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(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)
  -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(학부·석·박사 과정 포함)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

### III

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방법 : 농림수산물 R&D 통합정보서비스(FRIS)\*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(우편, 인편접수 불가)

\* 농림수산물 R&D 통합정보서비스(FRIS) : <http://www.fris.go.kr>

※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(중간저장 가능),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

- 신청절차

- FRIS 접속 → 로그인 →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→ 과제접수 → 신청내용 입력 → 신청서류 업로드 → 접수완료 → 접수증 수령

### <신청시 주의사항>

- ①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가입한 아이디어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함
- ② 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기관(주관, 협동, 위탁 등)이 접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연구기관을 사전에 등록해야 함
- ③ 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책임자(주관, 협동, 위탁 등)의 연구실적 등 회원정보를 갱신하여 주시기 바람

- FRIS(<http://www.fris.go.kr>) 접속



○ 로그인 후 농식품부사업참여하기(R&D연구마당) 선택

- 주관·세부·협동·위탁 등 각 연구기관의 기관등록 및 각 연구책임자의 회원가입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
-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정보수정을 완료 한 후 접수하여야 함
- 신규기관 및 연구자 등록은 우측 상단의 기관등록, 회원가입 기능 이용

\* 연구책임자의 회원가입 시 '전문가/참여연구원'으로 등록하여야 함

○ ‘공고/접수’ - ‘과제접수’ - 접수대상 사업 선택

**공고/접수**

- 공고조회
- 과제접수**
- 과제기술대상신청

**과제접수**

○ 접수 완료 후 삭제 사유를 입력하고 삭제요청이 가능합니다.  
○ 관리자가 삭제요청한 과제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 삭제가 가능합니다.

| No | 사업구분     | 접수번호       | 과제구분 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        | 과제분야       | 접수상태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1  | 첨단기술개발   | 2012400001 | 자유응모 | 식물자원 첨단기술개발 - 접수 테스트          |            | 식량작물 신종종육성 | 접수중  |
| 2  | 생명산업기술개발 | 2012100003 | 자유응모 | 기후변화 대응 CO2 저감을 위한 가축사료첨가제 개발 | 2012-02-29 | 첨가제        | 삭제요청 |
| 3  | 생명산업기술개발 | 2012100002 | 자유응모 | 생명산업기술개발 접수                   | 2012-02-29 | 식량작물 신종종육성 | 접수완료 |

1

**생물산업기술 개발사업** **첨단기술 개발사업**

○ 과제정보 전산 입력

- 기본상세정보, 연구팀구성, 참여기업, 연구개발비, 연구성과목표, 요약문/키워드 등을 압력하여야 하며 입력 도중 중간저장 가능

**과제신청서접수**

1. 기본상세정보 2. 연구팀구성 3. 참여기업 4. 연구개발비 5. 연구성과목표 6. 요약문/키워드 7. 파일업로드 8. 전산접수증발급

접수번호: \*사업구분: 생물산업기술개발

\*과제구분: 자유응모 \*보안등급(판단기준): 선택

\*연구개발분야: 선택 선택 선택

\*세부사업명: 선택하세요

\*농림수산식품육성 종합계획: 선택 선택

\*과학기술표준분류: 선택 선택 선택

\*7대20개산업: 선택 선택 선택

**저장** **목록**

**과제신청서접수**

1. 기본상세정보 2. 연구팀구성 3. 참여기업 4. 연구개발비 5. 연구성과목표 6. 요약문/키워드 7. 파일업로드 8. 전산접수증발급

1. 과제접수시 필요한 세부,협동 위탁 책임자 참여수를 정확히 입력해 주십시오.  
2. 값을 세팅하여야 참여기업/책임연구원 입력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 
3. 평가시 반영됩니다.  
4. (+)는 하부에 기관을 생성하는 버튼이고, (-)는 해당 기관을 삭제하는 버튼입니다.  
5. (+)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책임연구원의 세부정보(세부과제명, 참여를 등)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총괄기관 세부/협동기관 위탁기관

총괄 세부 등록

## ○ 제출서류 업로드

과제신청서접수

1.기본상세정보 2.연구팀구성 3.참여기업 4.연구개발비 5.연구성과목표 6.요약문/키워드 7.파일업로드 8.전산접수증발급

**필수 제출서류**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*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| 찾아보기... |
| *연구개발계획서 표지            | 찾아보기... |
| *연구개발계획서               | 찾아보기... |
| *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          | 찾아보기... |
| *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(붙임포함) | 찾아보기... |
| *유사-중복성검토의견서           | 찾아보기... |

**해당 시 제출서류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체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(붙임 포함) | 찾아보기...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(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체크)                 |
| 보안등급제안서                    | 찾아보기...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(연구과제를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과제로 신청한 경우에만 체크)       |
| 해외공동 연구기관 확인서 등            | 찾아보기...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(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가 아닌 경우에만 체크)                |
|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확인서            | 찾아보기...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(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체크) |

※제출대상 임에도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‘찾아보기’를 클릭하여 제출서류를 업로드하고, 해당 시 제출서류의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‘해당없음’을 클릭

- 제출서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완료 불가

## ○ 전산접수증 수령 및 접수완료

과제신청서접수

1.기본상세정보 2.연구팀구성 3.참여기업 4.연구개발비 5.연구성과목표 6.요약문/키워드 7.파일업로드 8.전산접수증발급

2012년도 첨단기술개발 접수 전산접수증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과제접수번호   | 2012100021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 과제명(한글)  | 첨단기술개발 접수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 과제명(영문)  | test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 연구기간     | 2012-02-29 ~ 2014-02-28 |         |            |
| 연구책임자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 연구개발분야   | 대                       | 중       | 소          |
|          | 식물자원/생산                 | 식물육종/번식 | 식량작물 신종종육성 |
| 과제계획서    | test.hwp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 익명화과제계획서 | test.hwp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| 승인서      | test.hwp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

접수완료하기 ▶ 목록

## □ 신청 시 제출서류

### ○ (필수) 공통 제출서류

-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
-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
- ③ 연구개발계획서
-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
-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(붙임 포함)
- ⑥ 유사·중복성 검토의견서
- ⑦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(붙임 포함)

### ○ (필수) 해당 시 제출서류

- ⑧ (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) 보안등급제안서
- ⑨ (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)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, 참여기업 해외기관 소개서 및 MOU 등 별도 증빙서류 : <붙임 1>의 ⑨번 서식 참조
- ⑩ (aT의 현장코칭, 컨설팅사업을 받은 경우) 현장코칭, 컨설팅사업 결과보고서
- ⑪ (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)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

※ ①, ②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번 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

※ 위 제출서류 서식은 농림수산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(<http://www.fris.go.kr>)에서 다운받아 작성

### < 제출 시 유의사항 >

-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,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등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직인 및 서명을 날인한 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
-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(자유응모과제의 경우)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익명화(홍길동 → 000, 서울대학교 → 00대학교 등으로 처리)한 파일을 등록해야 함
- 필수·해당 시 제출서류의 누락, 직인·서명의 누락,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

## IV

## 선정절차 및 기준

### 1. 선정절차



### 2. 선정절차 단계별 추진내용

#### < 사전검토 >

- 사전검토 목적 :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
- 사전검토 항목 :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제안요구서(RFP) 충족 여부,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,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여부, 신청서류 구비여부, 유사·중복성 검토 등

#### < 신청 시 점검사항 >

- ① 접수한 과제가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한 지원 자격, RFP의 과제구성요건(지정공모과제의 경우) 등에 부합하는가?
- ② 신청 연구기관이 공고된 '연구기관 신청자격'에 부합하는가?
- ③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는가?  
(주관연구책임자(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장)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인가?)
- ④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3책5공에 저촉되지 않는가?
- ⑤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중인가?
- ⑥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요구서류 일체의 내용 및 직인·서명 날인이 누락사항 없이 작성되었는가??
- ⑦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요구서류 일체가 온라인으로 정상 제출 되었는가?
- ⑧ 공고한 연구분야와 접수한 과제가 적합한가?

\* 공고사업의 분야에 한정하여 검토(예시, 식품분야 과제공고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분야 과제가 접수되는 경우)

## □ 검토 항목별 세부사항

- 공고 시 지원자격 및 과제구성요건 부합 여부 검토
  -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한 지원자격 준수
  - (지정공모과제의 경우) 지정공모과제별 제안요구서(RFP)의 과제(분야)구성요건, 연구팀 구성요건 부합
-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유무 검토
  - 연구책임자의 자격 준수
  -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기준 준수
  -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제한 준수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, 참여연구원으로 5개 과제 까지 참여 가능하며 NTIS 및 제출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로 검토
  -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여부 검토
  -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를 NTIS를 활용하여 검토
  -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
  -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출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로 검토
  - \*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한 연구자는 참여율 130%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
- 신청서류 검토
  - 연구개발계획서,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등 제출서류 일체의 적정성 및 미비사항 검토
- 유사·중복성 검토
  -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중복여부는 제출한 유사·

중복성 검토의견서로 검토하되 검토결과는 선정평가 시 연구과제 평가단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조치

- 그 외에도 NTIS와 FRIS를 활용하여 유사·중복성을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 유관기관에 중복성 검토 의뢰

\* 검토의뢰 항목 : 과제요약서 상의 연구목표·내용·기대효과 등

| 중복성 검토기준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중복성의 판단요소 : | 연구목표,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, 기대효과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중복성의 판단기준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            |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            | 서로 다른 연구 주체간에 연구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 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 판단 |
| ○ 중복성의 예외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            |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·추진하는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            | 각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○ 선행기술조사

-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요약서 내용을 토대로 국내·외 공개된 특허 및 논문의 조사·분석 실시
- 특허기술 동향조사 전문기관(R&D 특허센터)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

#### □ 사전검토 결과의 활용

- 전문기관장은 사전검토 후 연구기관·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, 신청서류 구비누락,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\*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7조(신청결과 및 사전검토 보고 등)
- 유사·중복성 검토결과, 선행특허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시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

## < 서면평가 >

- 평가방법 : 인터넷을 활용한 연구과제평가단의 온라인 서면평가
- 평가기준 :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4호·7호

| 과제구분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 세부 평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정공모 | 연구목표 및 내용<br>과의 부합정도     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구목표의 정량성 및 명확성</li> <li>◦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·체계성·창의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기술개발<br>수행능력              | 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</li> <li>◦ 연구관련 시설,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</li> <li>◦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</li> </ul> |
|      | 기술개발<br>추진전략             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</li> <li>◦ 연구팀간의 연계성, 추진전략의 합리성</li> <li>◦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</li> </ul>         |
|      | 기술개발 결과의<br>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| 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</li> <li>◦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·산업화 가능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사업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유응모 | 연구수행 목표 및<br>범위의 타당성     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개발목표의 명확성</li> <li>◦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</li> <li>◦ 연구범위의 타당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연구수행 계획 및<br>방법의 적절성     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</li> <li>◦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</li> <li>◦ 연구개발비 규모·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</li> </ul>        |
|      | 산업화 및 실용화<br>가능성          | 6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</li> <li>◦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</li> <li>◦ 개발기술의 산업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□ 서면평가 결과 조치

- 서면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대상과제로 분류하고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대상과제에서 제외함
- 평균점수는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
- 과제별 서면평가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 시 보완사항 및 선정대상 과제 제외사유로 활용
- 서면평가 점수 또는 과제수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음
- \*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」 제9조에 따라 서면평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5배수 이내에 해당되는 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
- \* 자유응모형 과제의 경우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」 제11조에 따라 서면평가 평균 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일정비율을 정하여 해당과제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음

## < 정책부합성평가 >

- ☐ 평가방법 : 농식품부 사업담당관(과제활용담당관)이 정책부합성평가 실시
- ☐ 평가기간 : 서면평가 기간 중
- ☐ 평가기준 :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6호·9호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평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(지정공모)<br>연구내용의 충실성(자유응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지정공모만 해당)과제제안요구서(RFP)의 사업내용 반영정도</li> <li>◦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사업(연구)내용의 충실성, 명확성</li> </ul> |
| 농업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내용의 농업 현장정책과의 부합성</li> <li>◦ 사업세부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의 현장정책과 연계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|
|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 구성정도</li> <li>◦ 과제의 내용과 연구팀의 전문성 관련정도</li> </ul>                |

### ☐ 정책부합성평가 결과 조치

- 평가는 적부심사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‘미부합’으로 분류된 과제는 선정 후보 과제에서 제외함
- \*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」 제8조의2(정책부합성평가)에 따라 평가실시자 전원이 ‘부합’으로 판단한 경우 ‘부합’으로, 그렇지 않은 경우 ‘미부합’으로 분류

## < 공개발표평가 >

- ☐ 평가방법 : 주관연구책임자 구두발표에 의한 공개발표평가
  -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 발표를 원칙으로 함
  - 세부 및 협동연구책임자의 배석 권장
  - 발표자료 : PPT파일 및 이를 인쇄한 발표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
  -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한 순서로 구성
- ☐ 평가시간
  - 지정공모과제 : 과제별 70분(구두발표 30분, 질의응답 40분)
  - 자유응모과제 : 과제별 50분(구두발표 20분, 질의응답 30분)

□ 평가기준 :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5호·8호

| 과제구분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 세부 평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정공모 | 연구목표 및 내용<br>과의 부합정도     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목표의 정량성 및 명확성</li> <li>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·체계성·창의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기술개발<br>수행능력              | 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</li> <li>연구관련 시설,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</li> <li>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</li> </ul> |
|      | 기술개발<br>추진전략             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</li> <li>연구팀간의 연계성, 추진전략의 합리성</li> <li>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</li> </ul>         |
|      | 기술개발 결과의<br>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| 3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</li> <li>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·산업화 가능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사업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유응모 | 연구수행 목표 및<br>범위의 타당성     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발목표의 명확성</li> <li>연구목표 달성 가능성</li> <li>연구범위의 타당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연구수행 계획 및<br>방법의 적절성     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</li> <li>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</li> <li>연구개발비 규모·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</li> </ul>        |
|      | 산업화 및 실용화<br>가능성          | 6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</li> <li>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</li> <li>개발기술의 산업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공개발표평가 결과 조치

- 공개발표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 후보 과제에서 제외함
  - 평균점수는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
  - 과제별 공개발표평가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대상과제 제외사유로 활용

< 과제선정 >

□ 과제선정 주체 :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□ 선정 방법

- 과제별 선정평가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평가단계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 대상과제에서 제외

## □ 종합점수 산출방법

- 평가단계별 평균점수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출
  - 서면평가 50%, 공개발표평가 50% 비율로 반영
- 연구개발과제선정 우대기준 및 방법에 따른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가·감점을 반영

### <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·감점기준 및 적용 기준 >

| 구 분            |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기산일<br>(기준일)          | 적용<br>기간 | 점수*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가점<br>부여<br>항목 | 최종평가결과 “매우우수”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종평가 결과<br>통보일          | 2년       | 3점  |
|                | 추적평가결과 “매우우수”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적평가 결과<br>통보일          | 2년       | 5점  |
|                |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정부포상(국무총리표창 이상)을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상일                     | 2년       | 3점  |
|                |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주관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상일                     | 2년       | 3점  |
|                | 보안과제를 연구계획에 맞춰 종료한 주관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구개발<br>협약종료일           | 2년       | 3점  |
|                |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,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(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농기평 담당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적용) | 전문기관**<br>담당자가<br>확인한 날 | 2년       | 3점  |
|                | 육성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자(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의 경우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기술<br>인증통보일            | 2년       | 3점  |
| 감점<br>부여<br>항목 | 기술실시 후,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(기업에 한정) 및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기관<br>담당자가<br>확인한 날   | 2년       | 5점  |
|                | 기술료 납부를 정당한 사유***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연구기관(기업에 한정) 및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기관<br>담당자가<br>확인한 날   | 2년       | 5점  |
|                | 중간평가결과 “성실중단” 또는 최종평가결과 “불량”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간평가·<br>최종평가<br>결과통보일  | 2년       | 3점  |
|                | 중간평가결과 “불성실중단” 또는 최종평가결과 “매우 불량”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      | 5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적평가결과 “미흡”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적평가 결과<br>통보일                       | 2년 | 5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***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***없이 연구를 포기한 주관연구기관(기업에 한정) 및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약포기<br>또는<br>연구포기로<br>인한 협약의<br>해약일 | 3년 | 5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정당한 사유***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기관<br>담당자가<br>확인한 날                | 3년 | 5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산결과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기관<br>담당자가<br>확인한 날                | 2년 | 5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 및 운영규정 제52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약의 해약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년 | 10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,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기관<br>담당자가<br>확인한 날                | 2년 | 5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음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<br>- 연구 또는 정산과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, 지연, 불성실히 제출한 경우(운영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4항, 제22조제4항 및 별표 4, 제28조제1항, 제5항 및 제6항 관련 등) 연구책임자에게 경고<br>-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에 불참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경고<br>- 그 밖의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경고 | 전문기관<br>담당자가<br>확인한 날                | 2년 | 5점  |
| 가점<br>부여<br>원칙           | 가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<br>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종합점수가 높은 1개 과제에만,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감점<br>부여<br>원칙           |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<br>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가·감점<br>중복 시<br>부여<br>원칙 |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되,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| 참여제한<br>중복 시             |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|

\* 관련규정 :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<별표.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>

# < 참고.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>

## 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작성방법

[별지 1]

### 연구개발계획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관리<br>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보안등급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□보안과제 □일반과제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②<br>공개가능여부            | □가 □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안과제 사유<br>(보안과제에 한함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※ 보안등급 제안서 내 보안<br>등급 해당항목 번호기재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③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<br>활용화대상여부        | □기술이전 □자체사업화           |       |
| ⑤사업추진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지정공모과제<br>□자유응모과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<br>과학기술<br>표준분류체계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⑦<br>과 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⑧<br>주 관 연 구 책 임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소속기관 명칭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과학기술인등록번호)         | (관리부서 전화)<br>(관리부서 팩스)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이름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e-mail)            | (전화번호)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지역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전공)                | (학위)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⑨<br>제 부 ( 협 동 )<br>연 구 과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연구개발비(단위: 천원)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⑩<br>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(단위: 천원, 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출연<br>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체부담금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정부외<br>출연금             | 합계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금                 | 현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1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2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3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4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5차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⑪<br>연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... ~ ... (년) ( )차년도 협약기간 ... ~ ..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⑫<br>참여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유형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책임자               | 전화번호(FAX)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당과제의 연구<br>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br/>             주관연구책임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⑪<br/>             ⑬<br/>             주관연구기관장 : (주관연구기관명)<br/>   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·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        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             직 인           </div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## ① 보안등급 분류 기준

### 1. 보안과제

-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,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
  - 가.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나.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  - 다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\*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라.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  - 마.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
- 보안과제로 신청 시 연구과제평가단의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“별첨 3. 보안등급제안서”를 첨부하여야 함
- 또한 보안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별표 5에 따른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함

### 2. 일반과제 :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

## ② 공개 가능 여부

1. 공개/비공개 여부 :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배포와 관련된 사항임
  - \*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제작하여 관련 연구·지도 기관, 산업계,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개/비공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
2. 공개가능 여부를 부(비공개)로 설정한 경우 : 최종보고서 배포 제한 조치
3. 공개가능 여부를 가(공개)로 설정한 경우 : 최종보고서 배포
  - \* 공개로 설정된 과제의 경우라도, 연구수행 과정에서 아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차후에 배포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
    -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: 1년 6개월 이내
    -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: 1년 6개월 이내

## ③ 사업명

### ○ 제출하는 과제의 사업명을 기재

-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,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,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,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, 기술사업화지원사업,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, 골든시드프로젝트,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등

#### ④ 사업추진형태

1. 지정공모과제 :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주제를 지정하고, 그 수행기관을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
2. 자유응모과제 :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공모에 따라 일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제

#### ⑤ 실용화 대상여부

1. 기술이전 :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·실시기업등에 이전할 예정인 경우
2. 자체사업화 : 연구개발결과물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(연구개발기관)이 직접 활용할 예정인 경우

#### ⑥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

##### ○ 제출하는 과제의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소분류명 기재

- 과제신청서 접수 시 기재한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소분류명을 기재
- \* 온라인 과제접수의 '기본상세정보' 입력 절차에서 확인 가능

#### ⑦ 과제명

##### ○ 과제명 작성 원칙

- 과제명은 과제 핵심내용이 명확하고, 쉽고, 간결하며, 과학적·기술적으로 표현 가능한 쉬운 용어로 사용하며, 정보공개에도 적합해야 함
- \* 한글 맞춤법에 맞아야 하며, 일반적이지 않은 약어는 되도록 사용을 삼갈 것
- R&D 과제명은 5개 R&D 속성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, R&D 목표·기술수준, 적용대상은 과제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\* R&D 5대 속성 : ①R&D 목적, ②목표, ③적용대상, ④기술수준, ⑤기술단계

| 속성      | 표현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성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R&D목적   | “ ~을 위한”의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R&D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적·기술적·사회적 목적이나 파급효과 등을 표현         |
| 적용대상    | “ ~용”의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R&D 결과의 1차 적용 대상이나 R&D 결과물이 적용될 시장·산업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|
| R&D목표   | 주로 “ ~기술”의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R&D를 통해 구현될 기술을 표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R&D기술수준 | 주로 “ ~급”의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R&D기술의 수준, 핵심성능 및 사양 등을 정량적으로 표현                     |
| R&D단계   | ‘기초/응용/개발’ 등 R&D단계 표현, 명확한 R&D 단계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, 전체 과제명으로 파악 가능토록 작성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과제명 작성 시, 의도적 모호성은 배제되어야 함
- \* ① 연구비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거나, ② 과제명에 기술수준이나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연구자간 비교가 쉬워지게 된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목표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
- R&D 결과물과 기술적·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용어와 화려한 미사여구 (rhetoric) 등은 사용을 삼가\*하되, 구체적인 규격, 범위\*\* 등을 함께 활용·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
- \* 고부가가치, 차세대, 첨단, 녹색, 그린 등
- \*\* 비빔밥의 고기능성 검증을 통한 고부가가치화(x) → 비빔밥의 혈당 강하 기능성 규명 및 신규 레시피 3종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(O)

## ⑧ 주관연구책임자

### 1. 주관연구책임자 및 과제관리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

### 2.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기재
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기재
- 과학기술인 등록서비스를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
  - \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)에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청 후 R&D연구마당 및 FRIS의 개인정보 수정

## ⑨ 세부(협동) 연구과제

### 1. 과제의 구성

- 협동연구과제 :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연구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주관 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
- 위탁연구과제 :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

### 2. 과제 구성 예시

- 주관연구기관(A대학교)에서 두 개의 과제 수행 : 책임자 1(주관), 2
- 협동연구기관(B연구원)에서 두 개의 과제 수행 : 책임자 3, 4
- 협동연구기관(C기업)에서 한 개의 과제 수행 : 책임자 5
- 위탁연구기관(D대학교)에서 한 개의 과제 수행 : 책임자 6



## ⑩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

### 1. 참여기업의 구분에 따른 기업부담금 기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부담금           | 현금부담금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대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 | 기업부담금의 15% 이상 |
| 중견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 | 기업부담금의 13% 이상 |
|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| 기업부담금의 10%이상  |
| 영농조합법인 또는<br>농업회사법인<br>(중소기업 규모)         | 총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 | 기업부담금의 10%이상  |
| 참여기업이 2개이고<br>각각 중소기업,<br>중견기업인 경우       |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 | 기업부담금의 13% 이상 |
|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,<br>중견기업의 비율이<br>2/3이상인 경우 |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 | 기업부담금의 13% 이상 |
|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,<br>중소기업의 비율이<br>2/3이상인 경우 |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| 기업부담금의 10%이상  |

\* 이외의 경우는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 별표 2.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

\* 지자체가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

### 2.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(범위)

- 기업이 현물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경우 연구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
  -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(단,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% 이내로 인정)
  -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(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로 인정)
  - 당초 정부와 기업 간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, 직접경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가능. 다만,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금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 시 제외

### 3. 참여연구원 수 : 해당연도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총 인원수 기재

## ⑪ 총 연구기간

### 1. 연구시작일

- 연구개발사업 공고 시 연구 시작일을 별도로 공지한 경우 : 해당일을 기입
- 연구개발사업 공고 시 연구 시작일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경우  
: 공고 마감일 + 3개월을 기준으로 1일/15일 중 가까운 날짜를 선택하여 기입  
예시) 과제공고마감일이 3월 3일인 경우 → 과제시작일 : 6월 1일  
과제공고마감일이 3월 21일인 경우 → 과제시작일 : 6월 15일

2. 총 연구기간 : 임의 연구시작일로부터 예상 종료일까지를 기재

3. 당해연도 협약기간 : 임의 연구시작일로부터 1차년도 예상 종료일까지를 기재

⑫ 참여기업 : 해당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명 및 관련정보 기재

⑬ 직인 날인 :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을 날인

##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작성 안내

### ○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작성(예시)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과 제 명 | 한글 과제명<br>(영문 과제명) |              |        |
| 연구책임자 | (성 명)              | (과학기술인 등록번호) |        |
|       | (소속기관명)            | (E-mail)     | (전화번호) |
|       | (지역) * 시, 군단위까지 입력 | (전공)         | (학위)   |

#### ○ 연구개발목표

\* 전산입력을 위해 100자 이상, 1000자 이내로 작성

#### ○ 연구내용

\* 전산입력을 위해 100자 이상, 1000자 이내로 작성

#### ○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(상품화 및 사업화 방법 등 포함)

\* 전산입력을 위해 100자 이상, 1000자 이내로 작성

|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색인어<br>(5개 이하) | 한글 | 키워드1, 키워드2, 키워드3, 키워드4, 키워드5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영문 | keyword1, keyword2, keyword3, keyword4, keyword5 |

## □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작성방법

### 1. 연구개발의 필요성

- \* 분량 제한 없음, 자유기술
- \*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,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

### 2.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

#### 가.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

- \* 분량 제한 없음, 자유기술
- \* 연구개발의 최종목표, 연구개발 목표와 성격,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등을 기술(전체 연구과제를 포괄하여 기재)

#### 나. 과제별(세부·협동)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

- \* 분량 제한 없음, 자유기술
- \*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을 각 세부/협동 과제별로 분리하여 작성  
(1세부)  
(2세부)  
(1협동)

#### 다.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

| 구분   | 연도    | 연구개발의 목표 | 연구개발의 내용 |
|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1차년도 | 2012년 | 목표1      | 내용       |
|      |       | 목표2      | 내용       |
|      |       | 목표3      | 내용       |
| 2차년도 | 2013년 |          |          |
| 3차년도 | 2014년 |          |          |
| :    | :     | :        | :        |

\* 연차별 1 페이지 이내로 작성

### 3.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

- \*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시 평가위원이 평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객관적/정량적인 지표/기준을 제시

### 4. 연구개발의 추진전략·방법 및 추진체계

- \* 추진전략·방법 : 기술정보수집, 전문가확보,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(접근방법) 등을 기술
- \* 추진체계 : 국내·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,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그림, 순서도, 차트 등을 이용하여 도식적으로 표시

### 5.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(국제공동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함)

- \* 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) 추진배경, 성공가능성, 연구개발비, 연구개발인력,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작성

### 6.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

- \* 활용방안 :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과 이에 따른 사업화, 추가연구, 기술이전 등의 내용을 작성
- \* 기대성과 :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·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

## 7.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

| 성과목표    | 지식재산권 |    | 논문  |          | 학술<br>발표 | 기술<br>거래 | 교육<br>지도 | 사업<br>화 | 기술<br>인증 | 인력<br>양성 | 정책<br>활용 | 홍보<br>전시 | 기<br>타 |
|----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출원    | 등록 | SCI | 비<br>SCI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최종목표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1차년도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2차년도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3차년도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4차년도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5차년도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소 계 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종료 1차년도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종료 2차년도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종료 3차년도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종료 4차년도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종료 5차년도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소 계 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| 합 계     |  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

\*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/최종/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

\*\*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

| 성과지표명   | 세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과지표명 | 세부항목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지식재산권   | 특허, 실용신안, 의장, 상품, 규격<br>품종, 프로그램 | 기술인증  | 기술·제품 인증 등         |
| 논문/학술발표 | 국내외 논문(SCI, 비SCI)<br>국내외 학술발표    | 인력양성  | 연구인력 활용/양성         |
| 기술거래    | 기술이전, 기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책활용  | 정책건의, 정책반영 등       |
| 교육지도    | 교육지도(현장컨설팅)                      | 홍보/전시 | 신문, 방송, 저널, 전시회 등  |
| 사업화     | 제품화, 고용창출, 매출발생 등                | 기타    | 국제화협력, 타 연구개발 활용 등 |

8. 주관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(신청하는 연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대표실적 5개 이내)

| 연구<br>제목 | 연구<br>내용 | 연구<br>기간      | 발표서적<br>또는 학술지명<br>(연호권호 포함) | 연구수행<br>당시의<br>소속기관 | 역<br>할<br>(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) | 연구비<br>지급기관 | 비고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| 2009~<br>201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X대학교               |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| XX대학교       | 학진<br>등재지 |
|          |          | 2010~<br>2011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A연구원               |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| 한국<br>연구재단  | SCI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2010~<br>2011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A연구원               |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| 농기평         | SCI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2010~<br>2011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A연구원               | 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서적    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

9. 주관연구책임자 특허, 실용화 실적 등(10개 이내)

\* 최근 5년간의 특허 및 실용화 실적을 자유양식으로 기재  
(작성 예시)

| 등록번호               | 특허 제목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특허 09XXXXXX호, 2009 | XX을 이용한 XX기술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10. 연구책임자(주관, 세부, 협동)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

(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 
하며,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“해당 없음”으로 표기)

| 구분 | 부처명 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기관 | 연구비(원)<br>(과제신청자 연구비) | 연구기간<br>(부터~까지) | 역할<br>(연구책임자 또는<br>연구원) | 참여율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주관 |     |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중인<br>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 기재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세부 |     |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중인<br>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 기재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협동 |     |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중인<br>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 기재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11. 연구성과의 등록·기탁 의향

\*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하게 될 논문, 특허, 보고서원문, 연구기자재, 기술요약정보, 생명자원, 화합물, 소프트웨어 등을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 
연구성과 분야별 관리·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

12. 세부·협동·위탁책임자 및 연구원 편성표(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 기재)

| 과 제 명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| 과학기술인<br>등록번호 | 소속기관명 | 직급 | 전공 및 학위 |   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| 학위      | 연도 | 전공 | 학교 |
| <1세부><br>XX의 XX기술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
| <1협동><br>XX의 실용화<br>기술 개발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   |         |    |    |    |

\*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전원의 정보를 기재하고, 모든 연구진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기재하여야 함

13.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(단위 : 천원)

가.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

(단위 : 천원)

| 비목       | 연도<br>세목         |      | 1차년도 |    | 2차년도 |    | 3차년도 |    | ... |    | 합계 | 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금액   | 비율 | 금액   | 비율 | 금액   | 비율 | 금액  | 비율 | 금액 | 비율 |    |
| 직접비      | 인건비              | 미지급용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지급용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현물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학생인건비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연구<br>장비·<br>재료비 | 현금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현물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연구활동비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연구수당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간접비      | 간접비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연구개발비 총액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
나. 당해연차 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

(단위 : 천원)

| 비목       | 연도<br>세목         |          | 제1세부(주관) |    | 제2세부 |    | 제1협동 |    | ... |    | 합계 | 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금액       | 비율 | 금액   | 비율 | 금액   | 비율 | 금액  | 비율 | 금액 | 비율 |    |
| 직접비      | 인건비              | 미지급<br>용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지급용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현물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학생인건비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연구<br>장비·<br>재료비 | 현금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현물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연구활동비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연구수당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| 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간접비      | 간접비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| 연구개발비 총액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

다.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

\* 연구기간 중 해당년차(예 : 1차년도)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  
 \*\* 과제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: (1)-(가)의 아래에 [제1세부] 또는 [제1협동] 등으로 구분

(1) 인건비

(단위 : 천원)

| 과제<br>구분 | 성 명 | 과학기술인<br>등록번호 | 부서명<br>(직급) | 월<br>급여 | 참여시작일 | 참여<br>개월수 | 참여율<br>(%) | 총액 | 타연구사업<br>참여현황 |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참여종료일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사업명           | 참여율<br>(%) |    |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. .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. .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. .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. .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. .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| 합 계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|

\* 과제구분은 제1세부, 제1협동 등으로 표시  
 \*\* 직급은 책임급, 선임급, 연구원급, 기타급으로 표기  
 \*\*\*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고 비고란에 '지급용' 또는 '미지급용'으로 표기  
 \*\*\*\*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에서의 참여율은 정부출연(연), 특정연 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,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책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

(2) 학생인건비

(단위 : 천원)

| 과 정   | 월 급여 | man-month 총량 | 총 급여 | 비 고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박사후과정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박사과정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석사과정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학사과정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총 액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|

(3) 연구장비·재료비

[제1세부]

① 연구기자재비

| 구분  | 품 명 | 규 격 | 단 위 | 수 량 | 단 가 | 금 액(원) | 비 고 |
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구입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|
| 임차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|
| 합 계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|

\*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'현물'로 표기, 합계란에도 ( )로 별도 기재  
 \*\*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

② 시설비

· 설치비

| 시설명 | 규격 | 단위 | 수량 | 단가 | 금액(원) | 비고 |
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|
|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|
|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|
| 합계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|

\*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'현물'로 표기, 합계란에도 ( )로 별도 기재

· 운영비(00원/개소 × 00월 × 00개소) : 원

③ 시약 및 재료비

| 품명 | 규격 | 단위 | 수량 | 단가 | 금액(원) | 비고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|
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|
| :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|
| 합계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|

\*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'현물'로 표기, 합계란에도 ( )로 별도 기재

④ 전산처리비

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○ 전산처리비 | ○○○원/건 × ○○건 = | 원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
⑤ 시험분석료

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○ 시험분석료 | ○○○원/건 × ○○건 = | 원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
⑥ 시제품 제작비

| 품명 | 규격 | 단위 | 수량 | 단가 | 금액(원) | 관련되는<br>세부연구내용 | 내부제작/외주가<br>공여부기재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|    |    |    |    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\*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'현물'로 표기, 합계란에도 ( )로 별도 기재

(4) 연구과제추진비

[제1세부]

① 국내 출장여비

|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|---|
| ○ 국내여비(○박 ○일) | 원 |
|---------------|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* 참여직급별로(책임급, 선임급, 원급, 기타급) 구분하여 작성하되,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를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</p> <p>**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</p> <p>***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며, 기관 자체여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(예:산학협력단 기준)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② 사무용품비,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

|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○ 사무용품비           | 원 |
| ○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| 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*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을 말함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③ 회의비

|       |   |
|-------|---|
| ○ 회의비 | 원 |
|-------|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*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는 회의비에 계상해서는 안되며, 연구활동비에 계상해야 함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④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○ 식대 | 원 |
|------|---|

(5) 연구활동비

[제1세부]

① 국외 출장여비

|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|---|
| ○ 국외여비(○박 ○일) | 원 |
| 여 비 합 계       | 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* 참여직급별로(책임급, 선임급, 원급, 기타급) 구분하여 작성하되,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</p> <p>**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</p> <p>***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며, 기관 자체여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(예:산학협력단 기준)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② 수용비 및 수수료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○ 인쇄비 · 복사 · 인화 · 슬라이드 제작비 | 원 |
| ○ 공공요금                     | 원 |
| ○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          | 원 |
| 수용비 및 수수료 합 계              | 원 |

## ③ 전문가 활용비 등
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○ 전문가 활용비   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국내외 교육 훈련비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도서 등 문헌구입비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회의장 사용료   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세미나 개최비   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학회·세미나 참가비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원고료       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통역료       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속기료         |       | 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○ 기술도입비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기술도입명         | 도 입 국 | 금 액<br>(단위 : 원) | 관 련 되 는<br>세부연구내용 | 비 고 |
|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합 계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전문가 활용비 등 합 계 |       |                 | 원                 |     |

\* 비고란에는 기술 도입의 유형(예 : know - how , 특허, 실용신안 등)을 기재

## ④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

|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|
| ○ 시험 · 분석 · 검사  | 원 |
| ○ 임상시험          | 원 |
| ○ 기술정보수집        | 원 |
| ○ 특허정보조사        | 원 |
|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합 계 | 원 |

⑤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

|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○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| 원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
(6) 연구수당

[제1세부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○ 연구수당      ○○○○원(인건비) × ○○% = | 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\* 연구수당은 해당 세부과제의 인건비(현물,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)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

(7) 위탁연구개발비(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는 별첨으로 첨부할 것)

[제1세부]

| 과제명(기관명) | 금액 |
|----------|----|
|          | 원  |

\*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

(8) 간접비

[제1세부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○ 간접비      ○○○○원(인건비+직접비) × ○○% = | 원 |
| - 인력지원비    ○○○○원(인건비+직접비) × ○○% = |   |
| - 연구지원비    ○○○○원(인건비+직접비) × ○○% = |   |
| - 성과활용지원비 ○○○○원(인건비+직접비) × ○○% =  |   |

\* 간접비는 해당 세부과제의 직접비(미지급인건비, 현물, 위탁연구개발비 제외)에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

\* 기관별 간접비 비율 :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고시된 간접비,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, 영리법인(공기업 포함)은 5퍼센트

15.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보안등급분류 |  |
| 결정사유   |  |

\* 보안등급 분류에는 “보안과제” 또는 “일반과제”로 표시

\* 보안과제의 경우 결정사유에는 ‘보안등급 제안서’ 작성 내용 중 주요 내용만을 명시

\* 일반과제일 경우 결정사유에는 “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”으로 작성

## 16.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

|  |
|--|
|  |
|--|

\*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(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,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, 보험가입 등)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

## 17. 참여기업 현황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기업체명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대표자(성명) |             |     |
| 법인등록번호          |         | 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            |     |
| 설 립 연월일         |         | . . | 주된 업종   |             | 업   |
| 기 업 유 형         |         |     | 상시종업원수  |             | 명   |
| 재<br>무          | 총 자 산   | 백만원 |         | 주 요 생 산 제 품 |     |
|                 | 자 기 자 본 | 백만원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매출액     | 년도  | ○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백만원 | ○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당기순이익   | 백만원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주소              | 본사      |     |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| - - |
|                 | 공장      |     |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| - - |
| 실무<br>연락<br>책임자 | 소속      |     |         | 성명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| 직위      |     |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| - - |
|                 | E-Mail  |     |         | FAX         | - - |